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낚시금지(제한)구역의 변경·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, 재검토 기간 규정(안 제27조제1·2·4항)

가. 개정 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('26.2.19. 개정, '27.2.20. 시행)으로, 낚시금지(제한)구역을 정기적 재검토 후 필요시 변경·해제하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재검토 기간·지정·해제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낚시금지(제한)구역의 변경·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(공고·안내판)을 적용하고, 재검토 기간은 5년*으로 규정
* 지방정부 조례로 재검토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낚시금지(제한)구역 지정 이후 주기적 재검토, 변경·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운영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2. 관찰물질 관련 업무 위임(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('26.2.19. 개정, '27.2.20. 시행)으로 신설된 '관찰물질 관련 업무'를 전문성 있는 소속기관에 위임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관찰물질의 지정, 고시, 조사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권한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미량물질 측정 기술 및 전문성을 보유한 국립환경과학원이 법정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(안 별표7)

가. 개정 이유

- 적산유량계 부착대상에 대한 일부 문구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, 현행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“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”을 “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”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적산유량계 부착대상에 대한 현행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집행에 일관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4. 수질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(안 별표10 비교)

가. 개정 이유

- 수질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하는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에 대한 비교 문구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, 명확화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질배출 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에 대한 현행 운영방식을 비교에 명확히 규정 하여 제도 집행에 일관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